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08

발의연월일: 2020. 9. 22.

발 의 자:김용판・한기호・태영호

권성동 · 최춘식 · 추경호

이종성 · 김승수 · 김영식

하영제・양금희・이 영

강대식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상 상속세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을 10%에서 50%까지 적용하고 있으며,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경우 가액의 일정 비율을 할증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있음.

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대주주등의 보유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까지 더해지면 최대 65%의 세율이 적용되어 가업상속자 등에게 큰 부담이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 상속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,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를 확대하며,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,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조세 회피나 국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, 자본 축척 유인 제공을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자녀 1명에 대한 공제 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함(안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).
- 나.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함 (안 제22조제1항).
- 다.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함(안 제23조의2제1항).
- 라.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상속세의 세율을 현행 최소 100분의 10부터 최대 100분의 50까지에서 최소 100분의 5부터 최대 100분의 25까지로 인하함(안 제26조).
- 마. 상속시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하는 할증 평가 규정을 삭제함(안 제63조제3항 삭제).
- 바.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(안 제71조제2항제2호).

#### 법률 제 호

##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1호 중 "5천만원"을 "1억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1천만원"을 "2천만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5천만원"을 "1억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1천만원"을 "2천만원"으로 한다.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"5억원"을 각각 "10억원"으로 한다.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억원"을 각각 "3억원"으로 한다.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6억원"을 "8억원"으로 한다.

제26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<과세표준>	<세 율>
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5
1억원 초과	500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)
5억원 이하	500인천 * (1학원들 소파야는 급박의 100분의 10)
5억원 초과	4코E00마이 + /E어이오 크고쉬노 그레이 100보이 1E)
10억원 이하	4천500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)
10억원 초과	1 여기 카마이 . (10 어이 오 크게 된 그 레이 100 브이 20)
30억원 이하	1억2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30억원 초과	5억2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)

제6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71조제2항제2호 중 "5년"을 "10년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그 밖의 인적공제) ① 거	제20조(그 밖의 인적공제) ①
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	
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	
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1	
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	
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	
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	
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	
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	
합산하여 공제한다.	
1. 자녀 1명에 대해서는 <u>5천만</u>	1 <u>1억원</u>
<u>원</u>	
2. 상속인(배우자는 제외한다)	2
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	
대해서는 <u>1천만원</u> 에 19세가	2천만원
될 때까지의 연수(年數)를 곱	
하여 계산한 금액	
3. 상속인(배우자는 제외한다)	3
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	
사람에 대해서는 <u>5천만원</u>	1억원
4.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	4

인에 대해서는 <u>1천만원</u>에 상속개시일 현재 「통계법」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·연령별 기대여명 (期待餘命)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

#### ②·③ (생 략)

제21조(일괄공제) ① 거주자의 사 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<u>5억원</u>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. 다만, 제67조 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<u>5억원을</u> 공제한다.

## ② (생략)

제22조(금융재산 상속공제) ① 거 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 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융채무를 뺀 가액(이하 이 조

<u>2천만원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일괄공제) ①
10억원
,
10억원
 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(금융재산 상속공제) ①

에서 "순금융재산의 가액"이라 한다)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 세가액에서 공제하되, 그 금액 이 <u>2억원</u>을 초과하면 <u>2억원</u>을 공제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23조의2(동거주택 상속공제) ①
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(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, 상속 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
제26조(상속세 세율) 상속세는 제 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

<u>3억원</u> <u>3억원</u>
1.・2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23조의2(동거주택 상속공제) ①
,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상속세 세율)

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"상속세산출 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<u>&lt;과세표</u> <u>준&gt;</u>	<세 율>
<u>1억원</u> <u>이하</u>	<u>과세표준의 100분의 10</u>
1억원 <u>초과</u> 5억원 이하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<u>5억원</u> <u>초과</u> 10억원 <u>이하</u>	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
10억원 <u>초과</u> 30억원 이하	<u>2억4천만원 + (10억원을</u> <u>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</u> <u>40)</u>
<u>30억원</u> <u>초과</u>	10억4천만원 + (30억원을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0)

제63조(유가증권 등의 평가) ① · 제63조(유가증권 등의 평가) ① · ② (생략)

③ 제1항제1호, 제2항 및 제60 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 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에 해당하는 주주등(이하 이 항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 의 주식등(대통령령으로 정하


<u>&lt;과세표</u> <u>준&gt;</u>	<세 율>
<u>1억원</u> <u>이하</u>	<u>과세표준의 100분의 5</u>
1억원 <u>초과</u> 5억원 이하	500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)
<u>5억원</u> <u>초과</u> 10억원 <u>이하</u>	4천500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<u>15)</u>
10억원 <u>초과</u> 30억원 이하	1억2천만원 + (10억원을 <u>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</u> <u>20)</u>
<u>30억원</u> <u>초과</u>	<u>5억2천만원 + (30억원을</u> <u>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</u> <u>25)</u>

②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「법인세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 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.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(생 략)

제71조(연부연납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 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각 회분의 분할납 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 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④ (현행과 같음)	
제71조(연부연납) ① (현행과 겉	ŀ
<u> </u>	
②	-
	-
	-
	-
	-
	-
1. (현행과 같음)	

2. 제1호 외의 경우: 연부연납	2
허가일부터 <u>5년</u>	10년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